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096

발의연월일: 2020. 12. 03.

발 의 자 : 윤건영 · 강병원 · 고영인

기동민 · 김주영 · 맹성규

박상혁 · 서동용 · 송영길

오영환 • 윤영찬 • 이규민

이동주 • 이용빈 • 이타희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우리국민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체류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'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'체결이 있어야 함

한편, 우리 도로교통법은 외국인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

하지만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맺으려는 국가에서는 자국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. 이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이유로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

이에 관련법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도록

법을 개정, '운전면허 상호인정' 협상에서 우리측 선택의 폭을 넓혀합의를 용의하게 하고자 함. 법이 통과될 경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운전면허 관련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(안 제84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제3항 전단 중 "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"를 "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84조(운전면허시험의 면제) ① 제84조(운전면허시험의 면제) ① · ② (생 략)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 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 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한다. 이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 발급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 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회수할 수 있다. -----있다.